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9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,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.

2. 주요 골자

- 시장의 책무에 신설된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).
-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(안 제4조제2항).
-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”를 “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”로, “포함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· 시행해야”를 “포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”를 “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산림교육 전문가”를 “산림교육전문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산림교육프로그램”을 “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20조”로, 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을 “비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책무) (생 략)	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‘산림교육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,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 〈신 설〉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. 산림교육 전문가의 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·시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----- ----- 포함하여야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----- 2. 산림교육전문가 -----</p>

	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	----- --
	3. (생략)	3. (개정안과 같음)
	4. 산림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	4.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-----
	5. ~ 7. (생략)	5. ~ 7. (개정안과 같음)
<u>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	<u>③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	<u>③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1. ~ 6. (개정안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<u>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</u> <u>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1.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</u> <u>2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 <u>3. 산림교육 연구 사업</u> <u>4.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</u> <u>5. 그 밖에 시장이 산림</u>	<u>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</u> (개정안과 같음)

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</p> <p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	<p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</p> <p>----- 법 제20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비용을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 〈단서 삭제〉</p>
	<p>〈삭 제〉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립·시행해야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로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
3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
4.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
7.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,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
2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산림교육 연구 사업
4.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
5.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· 시행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· 시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</u></p> <p><u>2.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</u></p> <p><u>3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</u></p> <p><u>4.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</p> <p><u>5.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6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</u></p> <p><u>7.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</u> <u>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</u></p>

	<p><u>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</u></p> <p><u>2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</p> <p><u>3. 산림교육 연구 사업</u></p> <p><u>4.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<u>제5조 ~ 제7조 (생략)</u>	<u>제6조 ~ 제8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)</u>
<u>〈신설〉</u>	<u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제8조 ~ 제10조 (생략)</u>	<u>제10조 ~ 제12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u>